

문서

KAIST 학생봉사단 회칙

[회칙, 2019. 12. 05.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이하 본회)이라 칭한다.[개정 2017.11.23.]

제2조 (지위) 본회는 KAIST 학생들이 기획·진행하는 봉사활동 일체를 주관·협력·지원하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이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활동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한다.

1. 인간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 및 공공의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KAIST 학생들의 대내 및 대외 봉사활동을 주관 및 지원하여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도덕성과 책임감을 고취시켜 학교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업무 및 권한)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는 KAIST 학생들이 기획하는 봉사활동의 재정 및 운영을 협력·지원한다.
2. 본회는 KAIST 학생들이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재정 및 운영을 협력·지원한다.
3. 본회는 자체적인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4. 위 사업의 실현을 위한 연대 사업을 전개한다.

제5조 (구성) [개정 2019.12.05.]

1.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로 이루어지고, 해당하는 활동을 관장한다.

- ① 홍보부: 봉사단 사업의 대외 홍보 담당
- ② 복지부: 봉사단 내부 사업 및 친목 활동 담당
- ③ 사무부: 봉사활동 및 봉사단의 업무 조율, 예산 관리 및 회계 담당

제6조 (기록물 관리) 본회는 본회의 제반 사업을 진행할 시 항상 그 근거가 되는 기록물을 다음과 같이 남겨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심의 및 투명성 증빙이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구에 의해 완료된 증빙자료는 본회의 장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회의록
2. 타 봉사단체들과의 회의록
3. 타 봉사단체들과의 서신
4. 본회가 사용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5. 기타 본회의 운영투명성을 증빙할 기록물

## 제2장 단원

제7조 (자격) 본회의 단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지녀야 한다.

1.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학생회칙에 따라, 총학생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자.[개정 2018.03.01.]

2.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제8조 (선발) 본회의 단원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1. 매 학기 초 1회 (필요에 따라) 새로운 단원을 선발한다.
2. 선발된 단원은 정규 학기 2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1년 이상 활동해야만 한다.[개정 2018.03.01.]

제9조 (의무) 본회의 단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활동 및 사업에 참가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운영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3. 본회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 본회의 단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1.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활동에 대해 의결권을 지닌다.
2.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활동에 대해 발언권을 지닌다.

제11조 (징계) 본회의 단원이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단원을 징계할 수 있다.[추가 2018.10.25.]

1. 학기 도중에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 다음 학기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2번 반복할 경우 단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영구 제명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추가 2019.05.30.]

① 제 13조에 의거한 부장단 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시: 질병휴학)  
[추가 2019.12.05.]

제3장 임원

제12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단장과 부장으로 구성된다.[추가 2019.12.05.]

제13조 (부장단) 본회의 부장단은 단장과 부장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1. 매년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한 명의 단장을 선출한다.[개정 2019.12.05.]
2. [삭제 2018.03.01.]

제14조 (부장) 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05.30.]

제15조 (임기)[개정 2019.05.30.]

1. 본회 부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2. 단장 궐위 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3. 부장 궐위 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추가 2019.05.30.]

제16조 (업무) [개정 2019.12.05.]

1. 단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생봉사단의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
2. 각 부서의 부장은 각 부서들을 대표하며, 소속 부서의 활동을 총괄한다.
3. 단장 궐위 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장 중 가장 본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활동 기간이 같은 경우 가장 학번이 높은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학번이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탄핵)

1. 단장에 대한 탄핵은 단원 중 1/2의 연서에 의해 발의될 수 있다.
2. 단장에 대한 탄핵안은 총회에서 의결하며 제16조 3항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를 진행한다.[개정 2018.03.01.]
3. 단장에 대한 탄핵안은 제18조에 따라 의결한다.
4. 단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즉시, 해당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제16조 3항에 의거하여 직무대행이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8.03.01.]

제4장 운영

제18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총회의 의장은 본회 단장으로 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추가 2018.03.01.]
4.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학기 중간고사 주간 다음 첫 주에 의장이 소집한다.[추가 2018.03.01.]
5.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추가 2018.03.01.]
  - ① 본회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 ② 본회 임원 전원의 요구
  - ③ 본회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했을 때
6. 총회는 매 년 1회 이상 열리며, 단원들은 총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19.12.05.]
  - ① 본회의 회칙개정안 심의 및 의결
  - ② 본회의 단장 선출
  - ③ 본회의 단장 탄핵
8.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시에만 개최할 수 있다.
9. 총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9.12.05.]
  - ① 회칙개정안 심의 및 의결은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개정 2014.05.29.]
  - ② 본회의 단장 선출은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③ 본회의 단장 탄핵은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0.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서기가 총회의 내용을 속기로 기록하도록 한다.[개정 2018.03.01.]

제19조 (운영회의)

1. 운영회의는 본회의 상시 의결기구이다.
2. 운영회의의 의장은 본회 단장으로 한다.
3. 정기운영회의는 매주 의장에 의해 소집되며, 그 일시는 단원들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단원들은 운영회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개정 2018.05.10.]
4.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추가 2018.05.10.]
  - ① 정기 운영회의
  - ② 본회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 ③ 부서 재적인원 전원의 요구
  - ④ 본회 임원 전원의 요구
5.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① 본회의 목적에 맞는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② 본회가 지원할 봉사활동의 기획서 심의
  - ③ 본회가 기획한 봉사활동의 기획서 심의
  - ④ 본회의 회칙개정안 심의
  - ⑤ 본회의 단원 징계안 심의 및 의결[추가 2018.10.25.]
6. 봉사 예산 지원 사업의 경우, 부장단에서 (보완, 피드백, 주관 등) 심의를 하고 결과를 운영회의에서 발표한다.[개정 2019.12.05.]
7. 안건은 운영위원들의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개정 2014.05.29.]

제2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KAIST 글로벌 리더십센터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충당한다.[개정 2014.05.29.]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해 봄학기 시작일부터 당해년도 겨울학기 말까지로 한다.

제5장 회칙

제22조 [삭제 2014.05.29.]

제23조 (발효) 회칙개정안이 통과된 공포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개정 2014.05.29.]